

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 외 16인

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 의 자: 김근한·강승수·김낙관·김민성
김영태·김영길·김원섭·김정도
김재우·김춘남·박교상·신용하
양진오·이명희·이정희·정지원
허민근 의원(17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한 재활 인프라 구축으로 근로자의 치료 접근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2조

나. 부서검토: 보건행정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(이하 “외래재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①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, 교통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기간) 지원기간은 외래재활센터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금액)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,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「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협약서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제한)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 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료제출) 근로복지공단은 시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가 개소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92조(근로복지 사업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·운영

가.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

나.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

2.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
3.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(이하 “지정법인”이라 한다)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보건행정과

조 례 명	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2조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목적 및 지원대상(안 제1조~제2조)○ 지원내용(안 제3조)○ 지원기간(안 제4조)○ 임차료 지원금액(안 제5조)○ 지원제한 사항(안 제6조)○ 자료 제출 협조사항(안 제7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로복지공단 직영 외래재활센터의 지자체 최초 구미 유치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○ 현 조례안은 구미시의 임차료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는 제정 목적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어 차후 센터 개소 후 구미시민의 재활 니즈를 반영한 구미시 특화 사업이 필요할 경우 지원 조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○ 임차료 지원은 「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협약서」 나 별도의 MOU 체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	

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에 대해 체결한 「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협약서」에 따라 경비의 지출(세출)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0억원(연 2억원정도)의 범위에서의 외래재활센터 건물 임차료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해당없음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임차료지원	200	200	200	200	200	1,000
	소계(b)	200	200	200	200	200	1,000
□ 총 비용(a-b)		200	200	200	200	200	1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200	200	200	200	200	1,000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 계		200	200	200	200	200	1,000

5. 부대의견

6. 작성자 :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김민수(☎054-480-402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외래재활센터 임차료 지원 : 200백만원

- 예산편성 : 보건행정과
- 산출기초 : 약 16,700,000원 × 12월 = 200백만원